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2002 - 4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2. 10. 17.
제안자 : 조선제의원 외 4인

개정이유

상임위원회 설치로 전문위원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조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전문위원별 직렬조정
 - 행정 5급 2
 - ⇒ 행정 5급 1
 - ⇒ 행정·농업·토목·건축 5급 1

개정근거

-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(안)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**【별표】** 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전문위원) ① <u>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6.(생략)</p> <p>【 별표 】 : 신설</p>	<p>제3조(전문위원) ① <u>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【별표】 와 같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(현행과 같음)</p> <p>【 별표 】 : 별지와 같음</p>

【별표】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렬	직 급
의회운영위원회	운영전문위원	행정	지방행정주사
총무위원회	총무전문위원	행정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건설위원회	산업건설전문위원	행정 · 농업 · 토목 · 건축	지방행정 · 농업 · 토목 · 건축사무관